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7조 내지 제59조에 관련하여 학생단체(이하"단체"라함)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단체란 본교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통칭한다.

제3조(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한다.

- 1. 학생자치활동에 부합되어□ 할 것
- 2. 단체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찬동하는 15명이상의 회원 연명부와 그들의 입회원서를 첨 부하여 제출할 것
- 3. 지도교수는 동아리 및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대하고 학생처 장학복지팀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4. 부정적이며 건전하지 못하여 대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단체는 등록을 불허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 신규등록 : 단체로서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구비서류를 각2부첨부한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제출한다. <개정 2008.08.01>

- 1. 단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 2. 지도교수의 추천서
- 3. 회 칙
- 4. 활동 계획서및 예산안(소정양식)
- 5. 발기인의 명단과 발기인 총회 회의록
- ② 재등록
- 1. 단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 2. 회 칙
- 3. 임원및 회원 명단과 입회원서
- 4. 전년도 사업보고및 결산보고서(소정양식)
- 5. 신년도 활동계획및 예산서
- 6. 이상의 구비서류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제5조(승인) 제4조에 의거 단체등록 신청을 마친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제6조(임원선출) 임원은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그 명단은 7일이내에 총학생회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7조(지도교수) ① 학칙 제58조에 의거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단체로부터 추대받은 후 총장이 승인한다.

- ② 지도교수 해당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 하여 한다.
- ③ 지도교수가 해외연수나 출장,기타 개인사정등으로 인해 단체를 지도할 수 없을 때는 본 인의 기본 품의서에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D 한다.
- ④ 단체가 지도교수를 추대할 때는 지도교수의 전공,부전공,기타 취미활동이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과 부합되는 전임교수로 한다.

제8조(재정 및 시설지원) ①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재정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 한다.

- ② 학생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대학생의 본분에 일치하며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여부

-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교육적,문화적,공헌 여부
- 3. 행사계획의 건전성과 활동의 모범성 여부
- 4. 전년도 활동실적 여부
- ③ 단체의 성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취소,감액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체
- 2. 타 대학과의 동아리나 본교 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없는 단체
- 3. 단일 학부/학과나 혹은 동향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성되는 단체
- 4.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단체
- 5. 과거 1년간의 활동실적이 미진한 단체
- 6. 활동실적보고,결산보고를 하지 않는 단체
- 7. 동아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단체
- 8. 학교행사나 총학생회의 행사에 불참 또는 비 협조적인 단체
- 9. 학교 제규정을 준수치 않는 단체
- ④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회원에게 공개하여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9조(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마하다.

- ② 모든 행사에는 집회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한다.
- ③ 행사가 정상수업과 중복될 경우는 지도교수와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수업처리 의 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한다.
- ④ □간 옥외집회는 학교환경보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옥외집회를 할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서가 첨부 제출되어□ 하며 허가를 얻은후 실시하여□ 한 다.
- ⑤ □간 옥외집회시 불꽃놀이,횃불,모닥물 등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부득 한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한다.
- ⑥ 게시물,현수막 프로그램,티켓,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 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사전지도와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하여□ 하며 인쇄물을 배포코자 할 경우 인쇄물 배포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후 배포할 수 있다.
- ⑦ 모든 게시물은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 단, 그매수및 장소 는 게시허가 받을 때 조정받아□ 한다.
- ⑧ 매학기 중간 또는 기말(전교생이 실시하는 시험포함)고사 개시10일전부터 시험종료시까 지 각 단체의 행사(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 각 단체는 각행사의 완료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 경유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단,총학생회의 외비보조를 받은 행사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10조(집회신고서의 제출절차) ① 학부/학과 단위의 학생행사

- 1. 행사및 집회신고서는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원안결재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후 학생대표 가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 2. 총학생회비의 보조를 요청할 때에는 총학생회장을 경유하여□ 한다.
- ② 동아리 단위의 학생행사

통아리대표자는 지도교수로 부터 행사 및 집회신고서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한 다.

제11조(집회신고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① 정기집회(월례및 총회)및 단체의 운영에 관련 된 일반집회는 7일(공휴일 포함)전에 집회 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② 학,예술및 체육행사는 행사 개최 10일전에 행사내용 개요,예산관계 대본및 주체내용의 요약,학부(과)장 의견서,홍보물의 제작과 그 배부관계에 관련한 허가원을 첨부하여 집회신고 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개정 2008.08.01>
- ③ 타 대학이나 다른 기관과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14일전에 행사개최의 취지와 목적,행사 내용,설명서,예산서,참가교 동의서및 참가인원,홍보물 제작배부 허가원을 첨부하여 집회신고 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다.

제12조(간행물의 발간허가 신청) ① 학칙 제58조에 의거 재학생이 발간하는 정기,부정기의 간행물은 인쇄물 발간 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개정 2008.08.01>

② 간행물의 편집 인쇄및 배부등 자세한 것은 총학생회규칙에 따른다.

제13조(봉사활동) ① 봉사활동은 방학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방학시작 30일전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다.
- 1. 봉사활동 계획서
- 2. 예산계획서
- 3. 참가학생의 명단
- ③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단원수는 20명이상,봉사기간은 3일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봉사활동 결과보고서,결산서,자체평가서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14조(단체의 등록취소) 등록된 단체로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 규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 2.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활동을 할 경우
- 3. 학교 행사나 총학생회의 행사에 불참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 4. 본교 제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 5. 지도교수의 사임서가 수리된 14일 이내에 후임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제15조(단체의 해산) 재등록시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는 학생단체 등록마감일 이후 자동 해체로 간주한다.

제16조(단체활동의 잠정적 중지) 졸업준비위원회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는 업무(앨범 및 교지제작)가 끝나면 물품의 납품과 함께 다음의 임원이 선출될때까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지 또는 해산한다.

제17조(보칙) ①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복지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o 칙

- (1) 이 규정은 1983년 1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학생준칙

[2018.09.17 개정]

제 1 장 학생증

제1조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관계부서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학생증을 신청 교부 받아야 하며,학적변동사항(졸업,퇴학,제적 등) 및 유효 기간 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조학생증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은행의 현금직불카드로 교부되며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은행약관에 따른다.

제3조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학생증을 변조할 수 없다.

제5조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또는 도서열람실의 출입 및 학생증의 제시가 필요한 교내시설의 이용을 불허한다.

제6조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학생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집 회

제7조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학칙 제58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8.08.01>

제8조집회를 개최하기전 집회신고서를 집회 예정 7일(공휴일포함)전까지 학생처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집회시간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락되며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1>

제9조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학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는 학칙 제56조에 의한다.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 3 장 학생자치단체의 피선거권과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

제13조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대학생회,동아리연합회)의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18.09.17>

- 1. 학생자치단체의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자는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2.5이상 이어야 한다.
- 2. 학생자치단체장 출마시 학기제한은 아래와 같다.
 - 가. 정 4학기 이상 7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나. 부 2학기 이상 7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3.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자는 학생자치단체의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대학장 및 학부(과)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08.01>

[개정 2018.09.17]

제14조학생자치단체는 학년초에 소정양식에 의한 활동내용과 임원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5조총학생회 활동에 따르는 운영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1>

제16조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은 활동세부계획서 및 예산서를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1>

제17조학생 및 교내 학생단체는 정당 또는 이에 관련되는 사회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4 장 교외활동

제18조학생이 교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참가 7일전(공휴일 포함)에 인정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원을 제출,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1>

제19조국가적 행사 이외에는 시험기간중 교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허가된 교외행사 참가기간동안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학생은 학생처장의 허가없이 교외행사에 단체로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8.08.01>

제22조(행사동원) 총장의 동원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제23조본 준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준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1) 이 준칙은 서기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준칙은 서기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준칙은 서기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준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1.(시행일)이 개정 준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이 개정 준칙의 시행과 동시에 학생준칙의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 (6) 이 개정 준칙은 1995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 준칙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 준칙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 준칙은 199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 준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 준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 준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준칙은 200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14 이 준칙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본 규정은 학생지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칙 제55조 및 제56조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규정을 시행할 때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3조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 장 포상

제4조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을 받을 수 있다.

- 1. 학교와 사회발전에 공적을 남긴 학생
-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제 3 장 징계

제5조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

제6조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양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

제7조경고 및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이 금지되며 경고 및 근신 이외 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제8조총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수 있다.

제9조포상,징계의 발의와 심의,징계해제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삭 제)

제12조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stackrel{(10)}{\sim}$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벌에관한시행세칙

[2021.06.17 개정]

제1조(적용범위) 본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학업성적, 출결 상황 및 미등록 등의 교무행정상의 사유는 이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1.3.1>

제2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학업상, 공로상, 문화상 및 봉사상으로 한다.

학업상:재학4년간의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학생과 각 학부/학과에서 최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공로상:사상이 건전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어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문화상:각 부문에서 우수한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

다.

봉사상:학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 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발의) 위 제2조의 포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 1. 공적조서 1부.
-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3. 학부/학과장 의견서 1부.

제4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7.10.20, 2021.06.17.>

- 1. 본교 건학정신을 위배한 자.
- 2.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3.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손한 태도나 반항을 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 4. 학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 5.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6. 시험 및 각종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자.
- 7. 각종 제 증명서를 위조, 조작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방조한 자.
- 8. 학내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 사용하여 무단유출, 파괴, 변경함으로써 운용을 방해한 자.
- 9. 학교 및 관련 시설물을 무단 점유하여 훼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한 자.
- 10. 교내·외를 막론하고 정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을 한 자.
- 11. 학교 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반출한 자.
- 12.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한 징계요청이 있는 자.
- 13. 학교의 안정을 해치거나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자. <신설 2021.06.17.>
- 14. 총장의 경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신설 2021.06.17.>
- 15.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21.06.17> [개정 2021.06.17]

제4조의2(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한다.

- ②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근신은 7일 이내
- 2.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개월 이하
- 3. 퇴학은 학칙 제29조 2호에 의한 제적
- ③ 징계의 양정은 교무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근신 2회 이상 받을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3개월 초과 정학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퇴학을 의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

제4조의3(봉사명령) ①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의2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

- ②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징계대상 행위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정한다.
- ③ 봉사명령이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3.1]

제5조(징계의 발의) 위 제4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 1. 사건경위서 1부
-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1부
- 3. 학부/학과장 의견서 1부

제6조(징계자의 특별지도)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소속 학부/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

제7조(심의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3.1>

- 1 포상대상지
 - 가. 학생처장은 포상대상자로 제2조의 조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나.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부/학과장을 경유하여(삭제)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징계대상자
 - 가. 학생처장은 제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나. 학생처장 또는 교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당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 다.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부/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징계의 해제) 학부/학과장으로부터 징계학생에 대한 징계해제의견서가 제출되면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학부/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3.1>

제9조(통보) 포상은 공개하되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처장은 위의 사실(포상, 징계)을 학부/학과장, 교무처장 및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이 시행세칙은 198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8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은 199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은 1993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세칙은 199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세칙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세칙은 199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세칙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11 이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12 이 개정세칙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제상세탁는 2002년 2월 27일부터 시청인다)
- (13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세칙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세칙은 2021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반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남대학교 고시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시험준비를 지원하며 아울러 전체 학생의 학습의 요즘을 고취시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고시반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2.19>

- 1. 각종 시험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상담
- 2.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지도
- 3. 기타 심전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각종 국가고시를 위하여 시험준비반을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시험준비반을 지도.관리는 고시반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02.19>
- ③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2.19>

제4조(소관부서) 고시반의 소관부서는 학생처 심전생활관으로 하며 고시반의 지도,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02.19>

제5조(운영위원회) 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반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02.19>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심전생활관 교육자문위원이 겸한다. <개정 2009.02.19>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처 심전생활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09.02.19>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2.19>

- 1.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본 고시반의 관련 규정의 개정,폐지(안)의 심의
-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임기)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지도교수) <삭제 > 2009.02.19

제11조(고시반 학생의 선발) 고시반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시반 학생은 당해 학부/학과의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하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고시반 학생) ① 고시반에 선발된 학생 중 학업성과가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02.19>② 고시반 학생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업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수칙) 위원회는 고시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시반 학생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9>

제14조(퇴실) ① 고시반 학생이 수칙 및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업에 정진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실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2.19>

② 고시반 학생이 퇴실할 경우 장학금 수혜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9>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1) 이 규정은 1998년 6월 24일부터 실시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게시물관리규정

[2018.09.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벽보, 현수막 등 각종 교내 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물 게재자들에게 기회균등을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옥내·외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시물 관리부서) 게시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 각목과 같다. <개정 2008.08.01, 2016.03.23, 2018.09.17>

- 1. 외부관련 게시물 : 안전시설팀 및 게시물의 부착 주체나 게시 내용에 관련이 있는 부서
- 2. 학생관련 게시물
 - 가. 학생처 장학복지팀: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게시물
 - 나. 각 교학팀: 소속 학생회 게시물
 - 다. 기타: 게시물의 주체나 게시 내용에 관련이 있는 부서 [개정 2018.09.17]

제3조(게시물 관리 실무위원회)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팀·장학복지팀 소속 직원 각 1명,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는 게시물 관리 실무위원회를 두어 게시물의 내용, 게시 기간, 지정 장소에의 부착 여부, 게시물 철거 등 게시물 관리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6.03.23> [개정 2016.03.23]

제4조(게시물의 분류) 이 규정에 적용하는 게시물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형태별 분류
 - 가. 벽보
 - 나. 현수막
 - 다. 입간판
- 2. 내용별 분류
 - 가. 행사 홍보: 축제, 학술제, 초청강연, 공연 등
 - 나, 일반 홍보 : 공지사항 등
 - 다. 단체 홍보: 동문회, 동아리 안내 등

제5조(게시물 부착 허가) ① 외부에서 의뢰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안전시설팀에서 허가된 게시물만 부착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23>

② 교내 게시물은 제작 주체별로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단, 불법·미확인단체 게시물, 비방 및 유언비어 등의 게시물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03.23]

제6조(게시 준수 사항) ① 게시물에는 반드시 게시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② 게시물의 주제와 내용이 교육목적과 사회 일반 통념 및 상식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각종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④ 각종 게시물의 부착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기간 경과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1. 행사 홍보: 행사 시작 2주전부터 종료시까지
- 2. 일반 홍보 : 게시일로부터 2주간
- 3. 단체 홍보 : 동문회, 동아리 등의 단체 안내에 관한 홍보는 각 학기별 개강 일로부터 4주간

제7조(게시물의 제거) 부착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게시물의 내용이 훼손되었을 경우,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된 게시물 등 제6조의 게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학생은 항상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주시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규정

[2025.02.0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9조에 의하여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 장학에 관한 사무는 장학복지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08.01>

제4조(위원회) 본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 2 장 장학금

제5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와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6.19, 2012.10.25, 2012.11.27, 2013.07.12, 2013.12.24, 2014. 9.24, 2014.12.29, 2015. 4.17, 2016.09.02, 2017.02.21, 2017.10.20, 2017.12.21, 2018.02.01, 2018.05.30, 2019.01.18, 2020.01.06, 2020.05.29., 2021.06.17., 2022.05.25., 2023.01.27., 2023.07.03., 2024.02.22., 2025.02.06.>

- 2 교외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고 지급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06.19.>
- ③ 교내장학금 중 KNU Kairos 장학금의 지급 세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3.07.03.> [개정 2025.02.06]

제 3 장 장학금 배정

제7조(계획수립) ①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안을 수립한다.

- ② 장학금 지급계획안은 다음 각호 1에 의한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 1. 장학생 선정기준
- 2. 장학금지급 기준액
- 3. 장학금 재원 및 지급예산 산출표
- 4. 교내 성적장학금 인원배정표
- 5.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 내역

제8조(인원배정) 장학금배정은 별도 지급기준이 없는 한 학부(과)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 4 장 장학금 신청

제9조(신청자격) 본교 학생으로서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별표 1의 각호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방법) ① 장학금의 지급신청은 매학기별로 한다.

-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과) 또는 각 교학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2019.05.27>
- 1. 장학금신청서
- 2. 성적증명서
- 3. 국가고시 합격증
- 4. 재직증명서
- 5. 보훈대상자 증명서
- 6. 기타 증빙서류 [개정 2019.05.27]

제11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 또는 수혜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0.25., 2019.05.27.,

2022.05.25., 2023.07.03., 2025.02.06.>

- 1. 징계(유기정학 이상)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3.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미등록휴학, 재입학, 복학, 편입학한 자
- 4. <별표 1>의 기준성적 미만 자
- 5. 신입생성적장학금, 교육보호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에 한하여 재입학한 자
- 6.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
- 7. <삭제 2025.02.06.>
- 8. 직전학기 최소 수강신청학점 미만 신청자 <신설 2023.07.03.> [개정 2025.02.06]

제 5 장 장학생 추천

제12조(추천과정) 각 학부(과)장은 지급기준에 의거 장학생을 추천하고, 해당 교학팀은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복지팀으로 통보한다. 단, 장학복지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추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2020.01.06> [개정 2020.01.06]

제13조(추천기준) 제12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으로 추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20.01.06>

- 1. 학업성적
- 2. 가정형편
- 3. 장학생수의 학년간 균형유지
- 4. 학적변동사항
- 5. 제11조 (신청자격제한)
- 6. 제16조 (이중추천금지) [개정 2020.01.06]

제13조의2(추천심의) <삭제 2020.01.06> [개정 2020.01.06]

제14조(동점자 처리기준) 성적장학금 추천자중 동점자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를 적용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07.12>

- 1. 취득(신청) 학점수가 많은 자 (최대 수강신청 학점기준 대비 학생 수강신청 학점 비율 적용)
- 2. <삭제 2015.04.17>
- 3. 직전학기 평균평점 우수자
- 4. 연소자
- 5. 입학년도가 빠른 자 [개정 2015.04.17]

제15조(교체추천)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부(과)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 1. 본규정 제11조(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2.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 3. 이중지급 선발된 경우(제16조의 예외 경우 제외)
- 4. 기타 본 규정에 위반하여 선발된 경우

제15조의1(후반기 졸업생 성적장학금 추천) 후반기 졸업생의 최종 학기 성적장학금은 3학년으로 간주하여 (기준학점: 2012학년도 이전입학자 18학점, 2013학년도 이후입학자 16학점) 3학년 성적과 비교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2.10.25, 2013.07.12> [개정 2013.07.12]

제16조(이중수혜금지) ①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6.19, 2013.07.12, 2017.12.21>

- 1. 근로, 학업보조비, 생활비,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KNU리더십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
- 2.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장학금
- ② <삭제 2017.12.21>
- ③ 학비감면 성격의 교내장학금 이중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의 장학금 하나만 인정한다. <신설 2013.07.12> [개정 2017.12.21]

제17조(외부장학생 추천) 교외 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개정 2008.08.01>

- 1. 해당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의뢰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부(과)장 또는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 명의로 추천한다.
- 2.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3. 교외장학금을 학교를 통하여 지급할 때에는 학교에 입금 후 전달한다.
- 4. 해당 학부(과) 및 인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부별 균형을 참작하여 학생처장이 선정하여 배정하고 해당 학부장 또는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 명의로 추천한다.

제 6 장 장학금 지급

제18조(지급시기 및 금액) 교내장학금의 지급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초에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9조(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학비감 면을 받거나 수령한 장학금은 회수한다.

- 1. 본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 2. 장학금의 신청절차 및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제20조(배분기준) 본교의 장학금은 등록금 수입의 10%이상을 학비감면하며, 이중 30%이상을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 2012.06.19>

[개정 2012.06.19]

제21조(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해당금액의 학비 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지급보고) 학생처장은 매학기별로 장학사무 및 지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체육특기자 장학금 지급

제24조<삭제 2021.06.17.> [삭제 2021.06.17]

제25조<삭제 2021.06.17.> [삭제 2021.06.17]

제26조<삭제 2021.06.17.> [삭제 2021.06.17]

제 8 장 기타

제27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장학내규 또는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9.02.19]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2) 종전에 시행하던 규정(1979.3.1)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3)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본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제2학년 이상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구 규정에 의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198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규정은 198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¹⁰ 이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¹¹ 이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2 1.(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사용하) 전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규정"과 동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stackrel{(13)}{\sim}$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17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18\ \,$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2001학년도 특차모집 최종합격자로서 수능변환표
   준점수 총점 계열별 상위 6%이내인 자로 입학한 자는 특차장학금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수업료를 재학기간의 2년간(기준성적
   3.0이상) 면제토록 한다.
(24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되, 본 개정규정 시행전에 소년 소녀가장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도 교육보호장
   학금 수혜자격을 인정한다.
(26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규정은 2004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8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규정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규정은 2006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3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36
이 규정은 201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7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입생성적장학금, 교육보호
  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에 한하여 신청자격 제한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8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9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013학년도 신입학자와 2015학년도
   편입학자로,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2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와 2014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로 한다.
, (40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3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년 4월 17일부로 시행하며, 신입생 관련 장학금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로부터 시행하며, 신입생 관련 장학금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
(47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1일부로 시행하며, 관련 장학금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8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50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51 이 규정은 201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2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53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54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55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56 이 규정은 2021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57 이 규정은 2021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58 이 규정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59 이 규정은 2023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60 이 규정은 2024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61 이 규정은 2025년 02월 06일로부터 시행한다. )
```

국가근로장학제도에 관한 규정

[2015.06.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국가근로장학제도(이하 "근로장학제도"라 한다) 운영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근로장학제도의 시행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국가근로장학생"이란 이 규정 근로장학제도에 의하여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자를 말한다.
- 2. "정규학생"이란 대학 정규과정의 재학생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생, 제50조의 2에 의한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은 제외된다.

제4조(업무주관) 근로장학제도의 운영 및 관리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에서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근로장소의 창출
- 2. 근로장학생 지도 및 감독
- 3. 기타 근로장학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조(감독) 학생처장은 매월 근로장학생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그 근무상황부<서식3>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근로장학생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학생처장은 매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운영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근로장소) ① 장학금 수혜의 근로장소는 다음 각호 각목에 의한다. <개정 2010.6.25>

- 1. 전공 관련시설
 - 가.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 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 다. 연구소
 - 라. 시험.측정기관
 - 마. 실험.실습시설
 - 바, 도서관 등 교·내외 시설
- 2. 비전공 시설
 - 가. 장애자,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 나.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사업)
 - 다. 교내중앙행정부서
- ② 전항 제1호 가목의 의무근로비중은 10% 이상 이어야 하고, 산업체 성격에 적합한 전공으로서 단순 근로(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가 아니어야한다.
- ③ 제1항 제1호 가목의 산업체는 의무적으로 협력체결하여<서식4> 기업체의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공고) 근로장학생선발은 학내 그룹웨어 및 게시판과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신청) 국가근로장학생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후 각 호의 서면을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06.25, 2012.10.25>

- 1.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개정 2012.10.25>
- 2.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차상위계층 서류(해당자만) <개정 2012.10.25>
- 3. <삭제 2012.10.25.> [개정 2012.10.25]

제10조(선발기준) ①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정규학생으로 직전학기 2.0이상의 성적 취득자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0.6.25, 2012.10.25>

- 1.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개정 2012.10.25>
- 2.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개정 2012.10.25>
- 3.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개정 2012.10.25>
- 4. <삭제 2012.10.25.>
- 5. <삭제 2012.10.25.>
- ② 선정 기준이 동 순위인 경우 장애인, 다자녀가구 학생, 비정규직 자녀, 새터민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 교육기부 참여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③ <삭제 2012.10.25.>

[개정 2012.10.25]

제11조(중복수혜)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타 장학금의 중복수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내근로장학금(학기근로/수시근로)의 수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근로기간 및 시간)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당 2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야간 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

제13조(장학금 산정) ① 근로장학생의 시간당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교육부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0.6.25, 2015.06.01>

- ②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은 월 단위로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으로 산정하여 매월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0.6.25, 2012.10.25>
- ③ 근로장학생이 자의 또는 타의로 근로를 중단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제14조(자격박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장학생 자격을 박탈한다.

- 1. 근무기간 중 휴학 또는 제적한 때
- 2. 근무기간 중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자
- 3.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4)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